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90
----------	------

발의연월일 : 2017. 10. 20.

발의자 : 원유철 · 김순례 · 서청원

송희경 · 안상수 · 윤종필

이학재 · 임이자 · 정병국

조훈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많은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 현장을 직면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심리적 장애나 불안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의료지원에 심리치료도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활성화하여 경찰공무원의 건강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진료”를 “진료(심리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경찰 공무원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업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및 정 신건강검사와 <u>진료</u> 등의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료지원) ① ----- ----- ----- ----- ----- ----- ----- <u>진료(심리치료를</u> <u>포함한다)</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